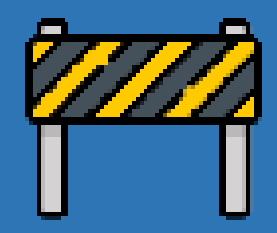




처마 위에서 청소작업 중 떨어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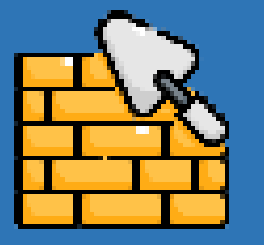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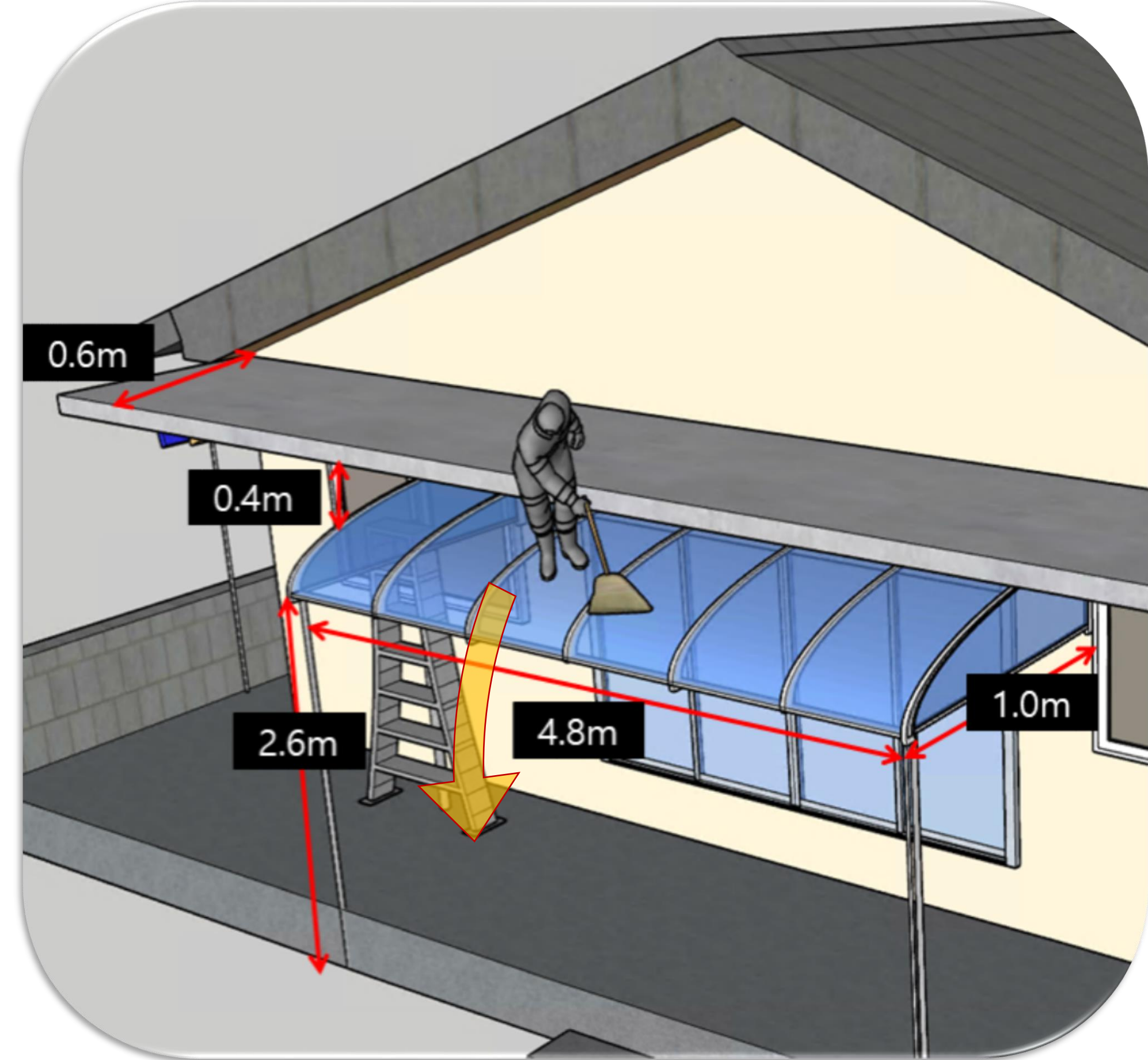
재해개요

발생형태	부상 정도	연령	동종경력
떨어짐	사망 1명	61세	-

2022.10.3.(월) 11:38분경 경남 사천시 소재 가정집 처마보수 및 전면 도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처마 위로 올라가 빗자루로 청소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(약 2.6m) 사망함

* 처마형태 : 폭이 좁고(0.4m) 끝부분이 곡면형으로 이루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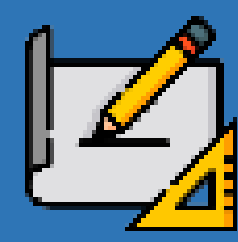
* 처마재질 : 폴리카보네이트로 표면이 미끄러움



작업상황

비정상 작업

- (정상) ① 추락위험이 있는 처마의 단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
②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처마위의 작업자에게 안전대 지급 및 착용 관리
③ 이동식 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
- (비정상) 추락방호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
① 추락방호망 미설치, ②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, ③ 작업발판 미설치 등



발생원인

1 직접원인

- (추락방호조치) 처마 위에서 작업 진행 시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미실시
- (작업발판 미설치) 작업장소인 처마는 폭이 좁고 곡면 형태로 미끄러운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직접 처마 위에 올라가 작업 시 균형을 잃고 미끄러질 위험이 높음

2 기여요인

- (관리감독) 재해당시 피해자는 지급된 안전모,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작업하는 등 보호구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



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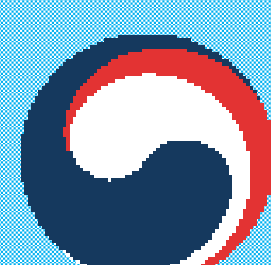
1 처마 위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 실시 철저

- 추락위험이 있는 처마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
- 위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 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
-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구조상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발판 설치
ex) 강관비계, 시스템비계, 이동식 비계, 사다리형 작업발판, 고소작업대 등

2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점검

-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
-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전 점검

※ 본 O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